

1

## 고용주에게

부상 내용을 상세히  
알리십시오.

통지를 받은 후에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 
72시간 내에 부상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.

- 응급조치 이외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
- 사고 발생일 이후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업무를 조정할 경우
- 대부분의 경우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부상을 입은 직원이 회복하는 동안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
2

업무 중 입은  
부상에 대해  
의사,

물리치료사 또는  
척추지압사에게  
알리십시오.

- 이들은 법률에 따라 48시간 내에 부상 내용을 WCB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WCB에서 검사와 진찰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.

# 업무 중 다치셨습 니까?

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 
받고 여기에 설명된  
절차를 따르십시오.

**WCB**

에 알리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.

즉시 [www.wcb.ab.ca](http://www.wcb.ab.ca) 에서 온라인으로 보고하십시오.

3

고용주로부터도 보고서 양식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일찍 보고하십시오.

WCB가 더 일찍 보고를 받을수록 부상 직원을 더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.

### 기억하십시오.

안전하게 직무에 복귀하려면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회복하는 동안 의사와 고용주에게 상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.

### 추가 정보 문의처:

무료 전화 1-866-922-9221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[www.wcb.ab.ca](http://www.wcb.ab.ca)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